손해배상(기)

[서울고등법원 2007. 1. 10. 2005나32809]



【전문】

【원고, 피항소인】 주식회사 하나은행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)

【피고, 항소인】

【제1심판결】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3. 11. 선고 2004가합62882 판결

【변론종결】2006. 11. 8.

【주문】

1

- 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- 2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3.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1999. 11. 26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1999. 11. 26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1999. 11. 26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1999. 11. 26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【이유】

】1. 인정사실

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, 2호증의 각 1 내지 3, 갑 제3 내지 9호증, 갑 제17호증의 1, 2, 갑 제20, 21, 25, 26 내지 30, 32, 33, 35, 37, 38, 58호증, 을 제2 내지 4호증, 을 제7호증의 1 내지 7, 을 제8호증, 을 제 9호증의 1 내지 3, 을 제11, 14,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당사자의 지위

원고(합병 전 주식회사 서울은행이 2002. 12. 2.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합병되면서 같은 날 상호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되었다)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, 피고는 1974. 2. 25. 원고에 입사하여 1999. 11. 2.부터 원고 산하 ◇◇◇지점(이하 '◇◇◇지점'이라 한다)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. 7. 26. 원고로부터 징계면직되었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나. 이 사건 대출의 실행

피고는 ◇◇◇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. 11. 19.부터 같은 달 26.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나래원건설(이하 '나래원건설'이라 한다)에게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(이하 '한국토지신탁'이라 한다) 발행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하여 합계 15,360,000,000원을 어음할인대출(정규담보 내의 어음할인대출은 영업점장의 전결사항이다)과목으로 대출(이하 '이사건 대출'이라 한다)하였다.

다.

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원고 여신업무 내규의 규정

- (1) 원고가 부동산신탁회사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원고의 여신업무내규 제7관 제6조는 ① 융자상담결과 채무자 등이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 및 조사·분석을 위해 "부동산조사분석의뢰서"를 작성하여 신탁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(제1항), ② 제1항에 의한 감정평가회사는 한국감정원으로 한다(제2항)고 규정하고, 제7조는 수익권증서의 발급의뢰시에는 "수익권증서발급의뢰서"를 작성·교부하여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신탁회사에 수익권증서의 발급을 의뢰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- (2) 원고가 어음할인 대출을 하는 경우 원고의 여신업무내규 제1관 제2목은 어음할인의 대상을 상업어음으로 하고(제1조), 어음할인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① 상업어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, 세금계산서, 물품 또는 용역 공급계약서 등의 서류를 징구하고(제3조 제1항), ② 상거래의 경로, 어음기간, 어음금액 등에 비추어 융통어음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, 위 내규의 별표

【이유】

】1. 인정사실

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, 2호증의 각 1 내지 3, 갑 제3 내지 9호증, 갑 제17호증의 1, 2, 갑 제20, 21, 25, 26 내지 30, 32, 33, 35, 37, 38, 58호증, 을 제2 내지 4호증, 을 제7호증의 1 내지 7, 을 제8호증, 을 제 9호증의 1 내지 3, 을 제11, 14,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당사자의 지위

원고(합병 전 주식회사 서울은행이 2002. 12. 2.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합병되면서 같은 날 상호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되었다)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, 피고는 1974. 2. 25. 원고에 입사하여 1999. 11. 2.부터 원고 산하 ◇◇◇지점(이하 '◇◇◇지점'이라 한다)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. 7. 26. 원고로부터 징계면직되었다.

나. 이 사건 대출의 실행

피고는 ◇◇◇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. 11. 19.부터 같은 달 26.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나래원건설(이하 '나래원건설'이라 한다)에게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(이하 '한국토지신탁'이라 한다) 발행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하여 합계 15,360,000,000원을 어음할인대출(정규담보 내의 어음할인대출은 영업점장의 전결사항이다)과목으로 대출(이하 '이사건 대출'이라 한다)하였다.

다.

-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원고 여신업무 내규의 규정
- (1) 원고가 부동산신탁회사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원고의 여신업무내규 제7관 제6조는 ① 융자상담결과 채무자 등이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 및 조사·분석을 위해 "부동산조사분석의뢰서"를 작성하여 신탁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(제1항), ② 제1항에 의한 감정평가회사는 한국감정원으로 한다(제2항)고 규정하고, 제7조는 수익권증서의 발급의뢰시에는 "수익권증서발급의뢰서"를 작성·교부하여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신탁회사에 수익권증서의 발급을 의뢰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- (2) 원고가 어음할인 대출을 하는 경우 원고의 여신업무내규 제1관 제2목은 어음할인의 대상을 상업어음으로 하고(제1조), 어음할인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① 상업어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, 세금계산서, 물품 또는 용역 공급계약서 등의 서류를 징구하고(제3조 제1항), ② 상거래의 경로, 어음기간, 어음금액 등에 비추어 융통어음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, 위 내규의 별표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